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17. 박수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 9. 1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1.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4.)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2.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수현 의원)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국가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예산 집행률은 비교적 낮게(2023년 기준 140개 사업, 예산액 1,000억원, 집행률 70%) 나타났으며,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방문객 수, 총수익, 총비용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인허가와 같은 행정 절차, 건설 및 시공 지연 등의 문제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 사업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없었음.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 관리가 미흡한 이유는 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사업의 이행 수준이 다를 경우 해당 시설들을 연계하는 관광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이 지연되는 등 성과를 충분히 내기 어렵고,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를 바탕으로 한 관광 개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종료된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는 등 법률체계를 강화할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

팅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 76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규)

- 광역관광자원개발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낙후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통상 5~10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남부권, 충청유교 문화권, 서부내륙권 등 3개 광역사업에 총 4조 2천억을 투자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런 관광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행정절차 미흡,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잦아 이로 인한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¹⁾.
- 또한, 해당 개발사업들에 대한 성과관리도 미흡하여 방문객 수, 총수익, 총비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²⁾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과를 평가할 수 있

1) <지자체들 수십 억 들여 너도나도 ‘출렁다리’…관광객 유입은?>, 2025. 2. 17., 뉴스1 (<https://v.daum.net/v/20250217061058037>)

2)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도록 하고, 관광개발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20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대부분의 관광개발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전환되므로³⁾, 동 개정안의 보조금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효율적·종합적으로 관광개발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개정을 통하여 부진한 관광개발사업의 원인 분석 및 문제 해결 지원이 가능해져 사업진척율을 제고할 수 있고,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람객 수 등 경제성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3) 광역권 관광개발,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관광자원 기반조성, 폐광지역 관광산업활성화 등 총 2,153억여원 규모의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이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될 예정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정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